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5. 23 선고 2023가단1986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유한회사 A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23.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22. 9. 29. 원고에게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7,000만 원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의미로 피고가 'E'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7,000만 원을 원고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위 E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현재까지 위 7,000만 원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위 7,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이 원고에게, 피고와는 무관한 채무이기는 하나 일정한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기도 이천시 F 단지도로 건축조성산업과 관련하여 E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비 중 7,000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2022. 9. 29.자 '공사대금 직불동의서'가 작성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또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D의 원고에 대한 7,000만 원 금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희영